

창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1048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363,6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3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6323 판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5. ‘C은 원고에게 18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21. 확정되었다(이하 ‘소외 판결’이라고 함).

나. C의 부 D가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로 C 등 4인이 있어 C의 상속지분은 2/11로 계산되었다. D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8. 10. 10.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361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9. 15. 위 등기소 접수 제82802호로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0. 7.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83407호로 채권최고액 37,200,000원의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5. 24.기준 시가는 45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1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사해행위 이후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바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 가액으로 추인되는 451,000,000원에서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을 공제한 409,000,000원 중 피고가 취득한 C의 지분가액인 74,363,636원($409,000,000원 \times 2/11$)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74,363,63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② 원고의 C에 대한 소외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과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거나, ③ 소외 판결에 따른 C의 채무가 C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모두 변제되어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명50555호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외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타채244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거나 소외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별지